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12. 4]

19.9.27일 이후에는 동일유형(영구임대)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55

2. 공급일정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1·2순위	'20.12.21(월)~12.24(목) [거주지 주민센터]	'21. 2. 23(화) (17:00 이후) [개별안내]	'21. 2.24(수)~ 2.26(금) (10:00~17:00) [광교실버주택 관리사무소]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공급 대상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m ²)					모집호수		구조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당첨자	예비자	
					기타공용	주차장				
고령자	22	16	22.03	13.39	10.03	10.24	55.69	4	16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26A	56	26.23	15.71	11.94	12.19	66.08	3	20	
	26B	72	26.32	15.74	11.98	12.23	66.27			
	26C	8	26.21	16.14	11.93	12.18	66.47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공가 7세대는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완납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자는 공가발생시기에 따라 입주 시기가 유동적입니다.
- 그 밖의 공용면적에 포함된 복지관과 오픈키친은 임대시설에서 제외되고 임대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 공급도중에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포함하여 호수추첨을 진행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22 (고령자)	2,100,000	210,000	1,890,000	41,830	15,010,000	1,500,000	13,510,000	117,000
26A,B,C(고령자)	2,498,000	249,000	2,249,000	49,770	17,800,000	1,800,000	16,000,000	138,000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외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이 추후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군」해당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12. 4.)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1955.12. 4. 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공급 순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차목 해당자(3순위)는 미달시 추후 모집할 예정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p>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공급 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1순위 (가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나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순위	가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목)
	나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자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실버주택은 우선공급 없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1,322,574원이하	1,851,603원이하
	2인가구	2,189,905원이하	3,065,866원이하
	3인가구	2,813,449원이하	3,938,828원이하
	4인가구	3,113,171원이하	4,358,439원이하
	5인가구	3,469,177원이하	4,856,848원이하
	6인가구	3,797,042원이하	5,315,858원이하
	7인가구	4,124,906원이하	5,774,868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자목(65세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목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 자산) 가액 합산 기준 2억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 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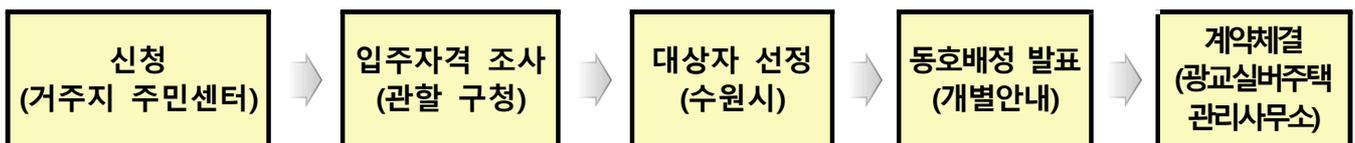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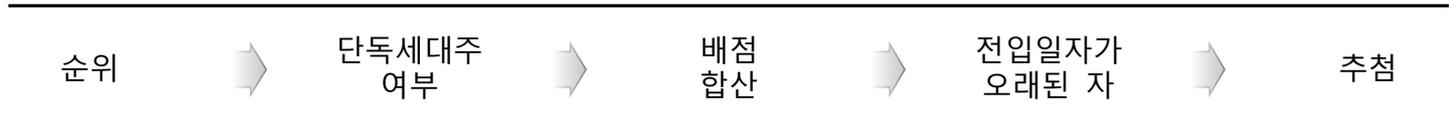
4. 입주자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접수시에는 수원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수원시의 방역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순서



-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단독세대주 여부 확인 후, 배점합산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0점
①연령배점 (50점)	고령자	만85세 이상	50	공고일 현재 기준
		만80세 이상 ~ 만85세 미만	40	
		만75세 이상 ~ 만80세 미만	30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	20	
		만65세 이상 ~ 만70세 미만	10	
②별도배점 (50점)	단독세대주	단독세대주	50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공급호실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변경불가)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5.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2. 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기본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등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공통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의) 동의서의 서명은 정자로 서명하여야 함. 	양식 첨부

<p>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p>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붙임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하는 공급형에 따라 공급신청서 작성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p>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붙임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 	
<p>위임장 (붙임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대리인 신청시 제출 ※ 상기 기타 대리인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와 함께 준비 	
<p>주민등록표등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p>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p>	<p><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p>주민등록표초본</p>	<p><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p>행정 복지 센터</p>
<p>가족관계증명서</p>	<p><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p>신청자격 증명서</p>	<p><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p>기타서류</p>	<p><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보훈보상대상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특수임무유공자(유족).참전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및 동호배정 발표

구분	일정	장소
당첨자/동호배정 발표	2021년 2월 23일 17:00 이후	개별안내
계약체결일	2021년 2월 24일 ~ 2월26일 (10:00 ~ 17:00)	수원광고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55)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입금증 ※ 입금계좌 : 농협 301-0208-7830-31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당일 현장 납부 및 입금확인이 불가하므로 계좌 입금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대상자(7세대)는 즉시 계약 가능하며, 나머지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추후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입주자 및 예비자에게는 계약일정 및 동호추첨 등에 관해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는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본건 주택은 일반 1,2순위만 모집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p>■ 지구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각 동 옥상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반경 3km 이내에는 광고중앙역(신분당선), 광고역(신분당선), 상현역(신분당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병원(병원 및 장례식장 등),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이 있습니다. • 북측으로는 20미터(4차선 이상)도로, 동측으로는 21미터(4차선 이상)도로, 서측으로는 13미터(2차선 이상)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지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방문차량으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 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여 이사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의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타입(MRL)으로 구조상 메인판넬이 최상층에 위치하여 기계 작동음 등의 소음이 상층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 시공 상태로 임대 예정입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가 설치·운영되는 지상1층 일부에는 단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지역냉난방, 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각종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드라이창(급기, 배기용) 위치와 크기, 우수 배관의 위치 및 우수용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외부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제반 훼손 부분은 입주자의 비용으로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 추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호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관리비 및 호실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 법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원광교 공공실버(영구임대)주택은 총 152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에 위치한 상가는 임대가 완료되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입점하였으며,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지상2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관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7대이며, 일반주차 27(상가주차장 3대 포함)대, 장애인 2대, 확장형 14대, 경형 4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3대이며 지하주차장 경사로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지역편의 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옥상텃밭, 지상2층 공용공간에는 개별창고, 계절옷장 및 세탁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입니다. • 옥상에 텃밭이 조성되어 입주민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별 적산열량계,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 및 수원시 규정에 따라 단지출입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텃밭의 작물 및 비료 등은 이용하는 세대가 직접 구입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공용 시설로 제공되는 일부 시설물외 관련 장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텃밭의 관리는 각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텃밭 및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지상1층 로비에는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다만,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에어컨 실외기는 지상2층 옥상에 설치합니다. • 복도에 세대별 급수 및 급탕계량기 설치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거실/침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 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마감재 및 발코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u>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8.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0.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의 위치

구분	위 치
<p style="text-align: center;">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위치도</p> <p>[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55]</p>	

문의	· 031-273-9850 (수원광교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
----	-----------------------------------

11.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경기주택도시공사 (124-82-08978)	(주)대우에스티 (301-81-79942)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06-81-092662)

2020.12.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수원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본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수원시청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 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 정도 등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복지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사업주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사업주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 여부 검색 주거급여 제외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수원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 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0

수원시장[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3]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p>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p>					
신청인 :					(인)
년 월 일					
수원시장[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p>※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붙임5]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앞면)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아래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및 총자산)**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①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 ②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18.12.11)되어 개정일 이후 공고된 주택의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 ③ **(소득)**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3. 신청자격의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에 맞아야 함
- ④ **(총자산 및 자동차)** 세대원 전원의 총자산 및 자동차금액이 3. 신청자격의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에 맞아야 함

2020년 월 일

서약자
(공급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위 임 장

아래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_____)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1. 위 임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수 임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첨 부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20년 월 일